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일.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10월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전반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건축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
 - 소규모 대지상의 건축행위 허용
- 법령에서의 삭제사항
 - 미관지구내의 건축, 도로안의 건축제한, 학교시설·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다. 법령에서 세부기준 명시사항

- 대지와 도로가 접하여야 하는 규정, 건축선에서 뛰어야 할 거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거리

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
-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

마. 조경공사비 예탁규정 삭제

바. 지역 지구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확대 지정

사. 건물과 건물사이의 연결통로 및 맞벽 규정신설

아.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1999.2.8일자 건축법개정과 5.8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상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변경, 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 삭제,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사항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의 주요취지는 건축제재 완화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삭제 사항으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건축제한」, 「풍치지구안의건축제한」 등이고 개정사항으로 「조경공사비 예탁규정」 개정등으로서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부 . 끝 .